

OECD 국가 규제 질 측정¹⁾

1. 규제의 질(Regulatory quality) 정의²⁾

- 규제의 질을 직접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결과물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
 - 이를 보완하기 위해 “**규제의 질에 관한 원칙(principles of regulatory quality)**”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실제 규제관리사례(regulatory management practices)를 평가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석

<규제의 질에 관한 원칙>

-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요구되어야 함
- 규제는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며 최소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하여야 함
- 신규 규제는 기존의 다른 규제와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야 함
- 규제는 과도하게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유연하게 규정하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향상되어야 함
- 규제는 투명하고 관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
- 규제과정은 관련자들의 의견 반영 등 개방성과 신뢰성의 문화를 조성해야 함
- 규제는 법적, 헌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
- 규제는 적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법적 강제력을 지녀야 함

2. 규제의 질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

(1) 정치적 지지

- 성공적인 규제 개혁 및 전략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고위 정책자의 개혁에 대한 명백한 정책적 언급과 지지가 중요함

1) OECD Policy Brief, "Measuring Regulatory Quality", OECD (2008)

2) OECD Jacob zone, Stephane, Chang-Won Choi, and Claire Miguet (2007), "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",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, No. 4, Pari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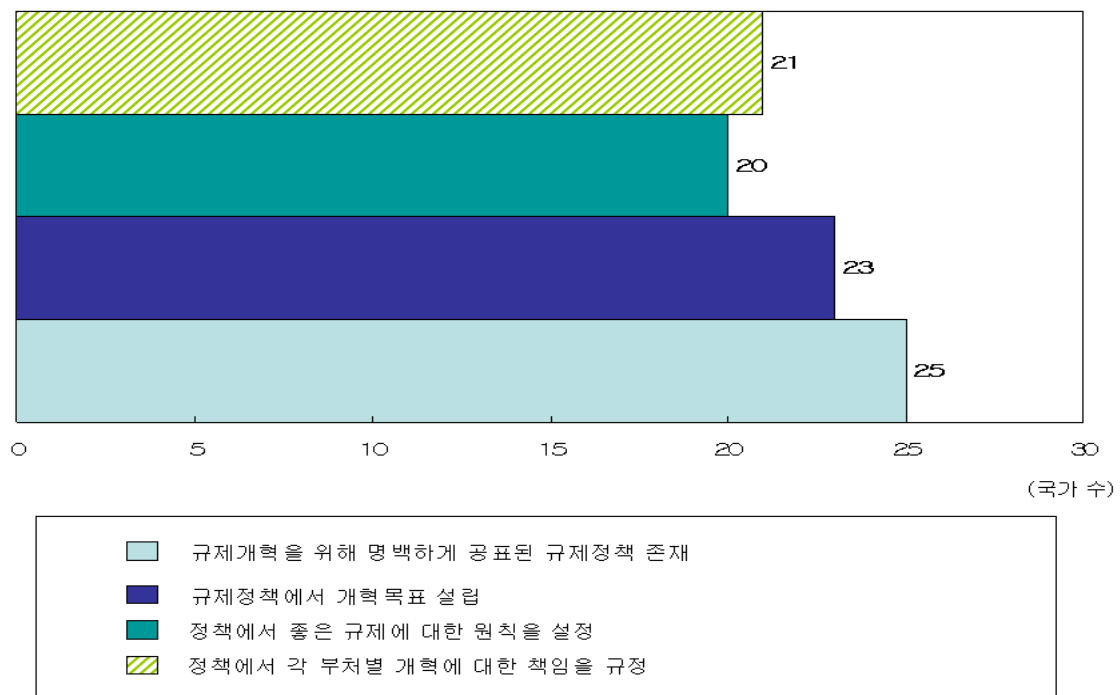
- 규제정책은 신규규제 평가 및 기존의 규제개혁 등의 규제활동을 포함

<효과적인 규제정책>

- ① 상위 수준의 정치적 레벨에서 채택
- ② 명백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규제의 질에 대한 기준을 보유
- ③ 지속적인 규제관리 역량을 제공

-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, 명백한 규제정책을 가진 국가들이 보다 빨리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경향을 보임
- 2/3 이상의 국가들이 명확한 규제의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

<그림 1> 범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을 위한 명백한 규제정책 표명(2005년)



<자료> OECD(2007), "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"

(2) 제도적 중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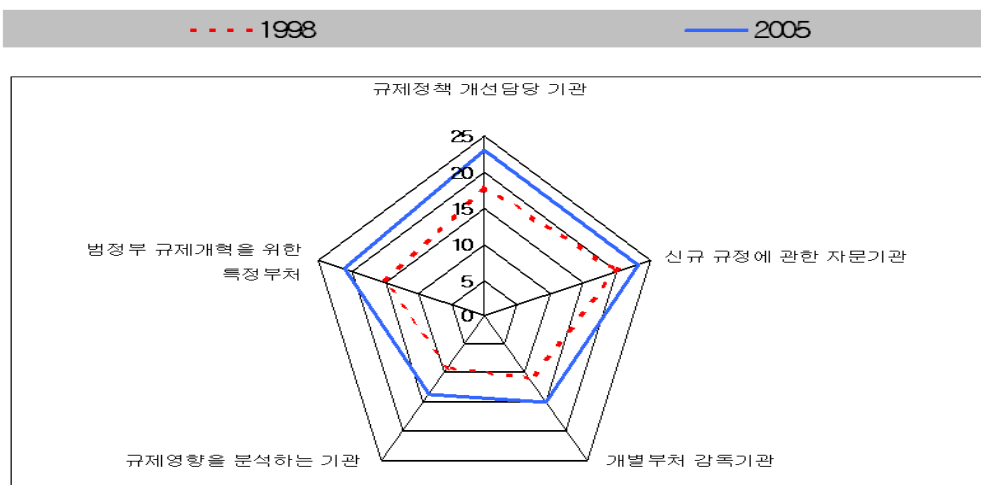
- 성공적인 규제정책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정부부처에 걸쳐 규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노력이 필요함
- 특히 규제감독기구는 신규 규제의 질을 점검하고, 행정간소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주요 정부기관에 설립됨

- o OECD 국가들은 정부관리 시스템으로 규제개혁을 통합하기 위해 최근 규제 감독기구를 설립 혹은 기능을 강화함
 - 2005년 24개 국가('98년 18개 국가)가 규제영향 분석을 위하여 설립
- o 2005년, OECD 국가 1/3 정도가 행정부서 내부 혹은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구 설립
 - 규제정책에 독립적인 견해 제공 및 정책 추진자로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개혁과정 지원

<표1> OECD 국가들의 규제감독기구 현황 (2005년)

국가	규제감독기구 (명칭/위치)	기능
호주	규제점검실(Office of Regulation Review)/ 생산성위원회(Productivity Commiss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 부처에 규제 질적 개선 및 기존의 규제 점검에 관한 자문 제공 · 불필요한 규제 감축 및 적절한 사용 권장
덴마크	규제개선과(Division for Better Regulation)/ 재정부(Ministry of Financ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규 및 기존 규제의 질 보장 · 정부의 규제정책 개발 및 연간 간소화계획 (action plans) 조정 · 행정부담에 관한 표준비용모델(SCM) 측정 및 다른 부처의 규제영향분석(RIA) 적용 지원
일본	규제개혁증진위원회 (Council of the Promotion of Regulatory Reform)	· 사회경제 구조 개혁에 필요한 사항 연구 및 고안
네덜란드	행정부담자문위원회(Actal) 사법부, 재정부, 경제부 등 별도 설립	·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행정부담 정량화에 중점을 두고 영향평가 연구에 주력
영국	규제개선집행부(BRE: Better Regulation Executive), 내각실	· 각 부처의 신규정책제안 검토 및 기업규제완화를 위해 부처와 공동작업 등
미국	정보규제실(OIRA: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)/ 관리예산실(OMB)	· 연방규정제정 관리 및 연방정보관리, 통계정책, 정보기술정책 감독
한국	규제개혁실(Office of Regulatory Reform(ORR)/ 국무총리실	· 각 부처의 신규 규제를 검토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원

<그림 2> OECD 국가에서 규제정책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 (국가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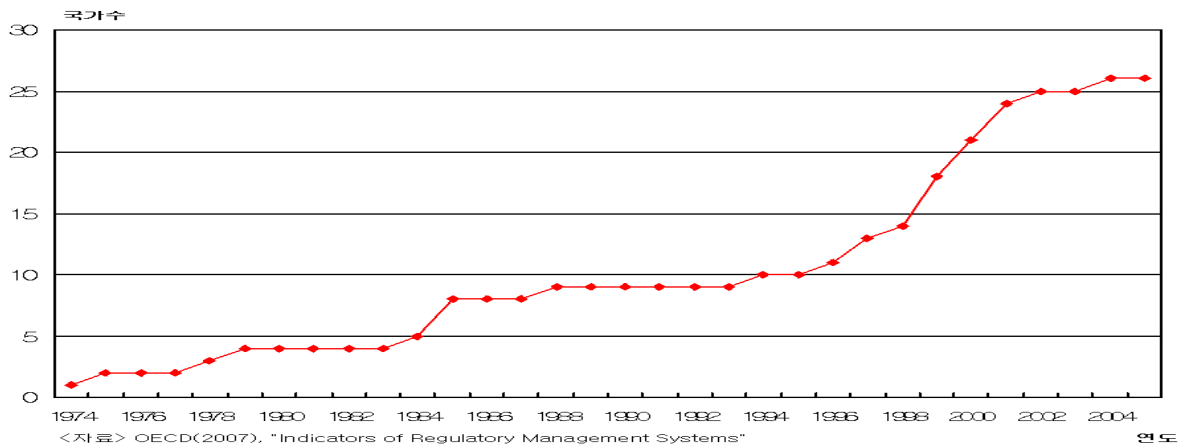
<자료> OECD Policy Brief(2008), "Measuring Regulatory Quality"

3. 규제개선을 위한 도구

(1) 규제영향분석(RIA: Regulatory Impact Analysis)

- o RIA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, 사회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규제의 긍정적,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임
- 2005년에는 모든 OECD 회원국이 최종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RIA를 사용하고 있으며, 주요 법안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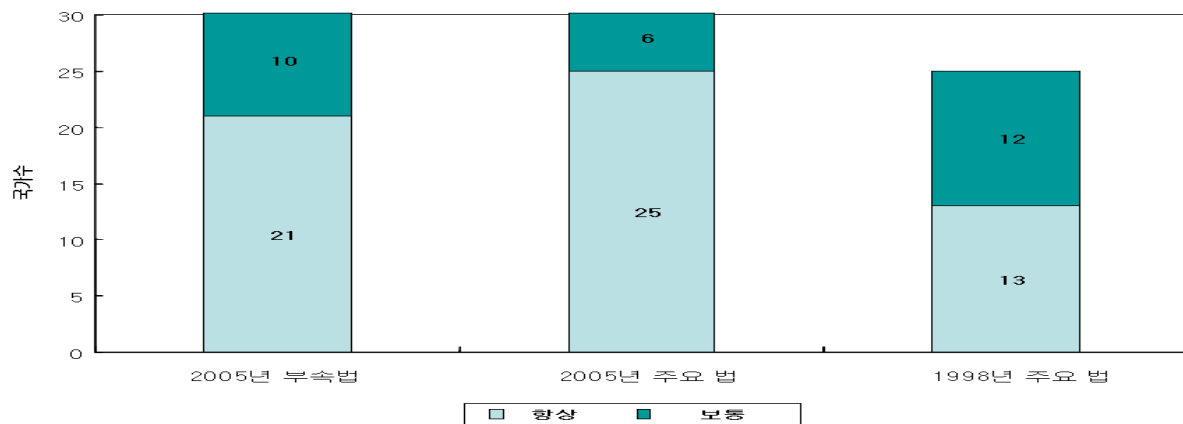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OECD 국가의 규제영향평가분석(RIA) 채택 동향



(2) 공공협의 (Public Consultation)

- o 기업과 일반 대중과의 협의는 규제의 질을 높이고 규제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인식됨
- 협의과정을 거친 규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규제실패 위험에도 덜 민감한 편이며, 투명성의 측면에서도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규제 준수도를 높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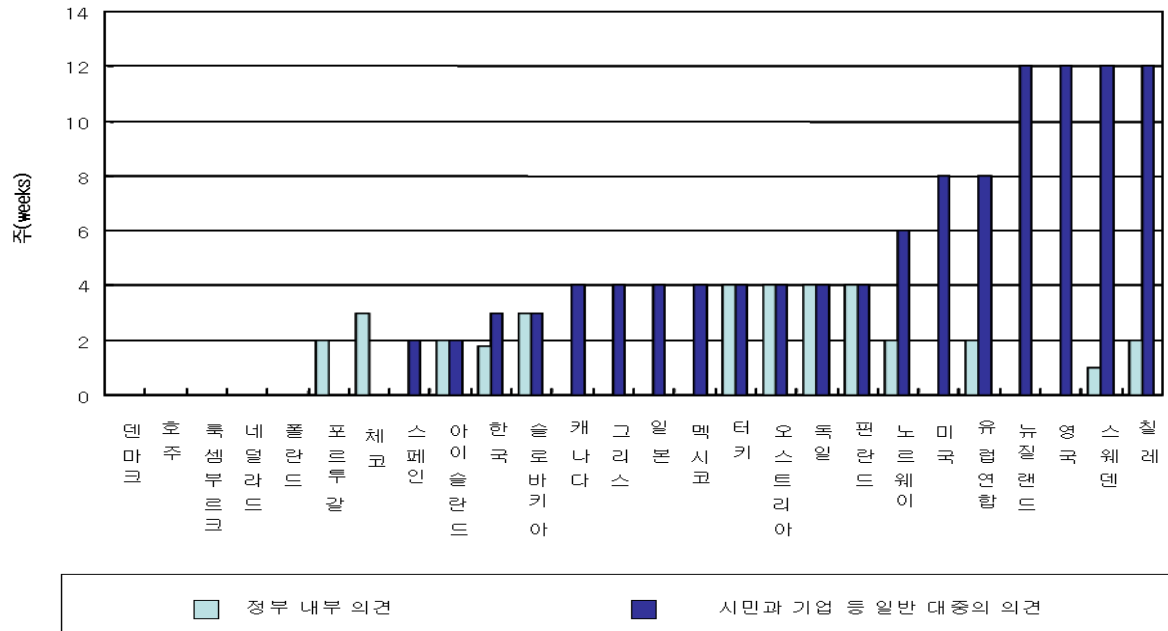
<그림 4> 법·규정 개발시 공공 협의(Public consultation) 여부



○ 효과적인 협의를 위해서 규제 제안에 관한 정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그룹에게 전달되어 고려될 수 있도록 함

- 규정 자체가 복잡할 경우 보다 장기적인 시간 여유를 주어 효과적인 협의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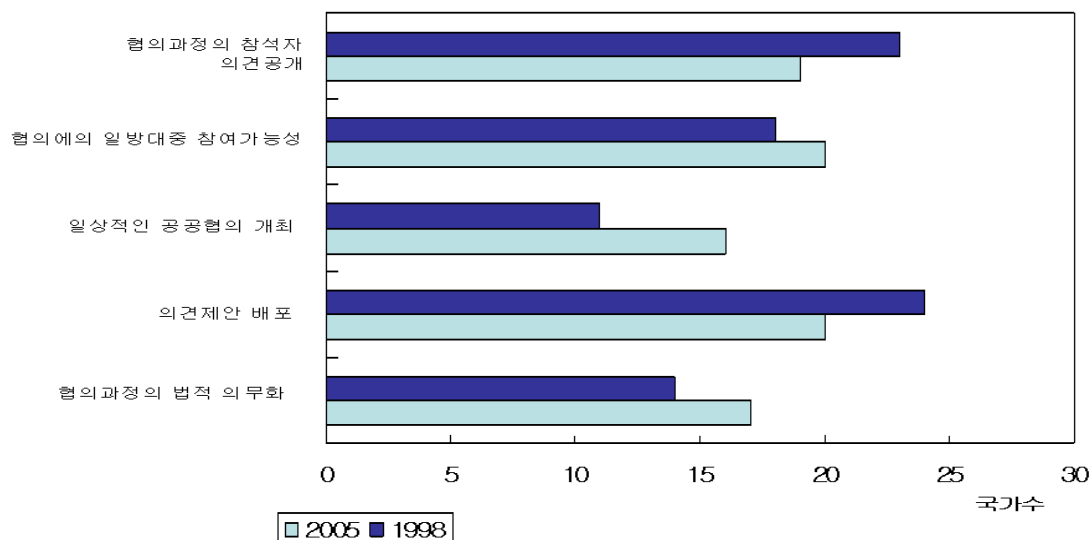
<그림 5> 협의 의견수용을 위한 최소 기간 (2005년)



<자료> OECD(2007), "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"

○ OECD 국가에서는 신규 규정에 대한 협의는 일상적인 관례가 되고 있으며 정부가 관련자들과 협의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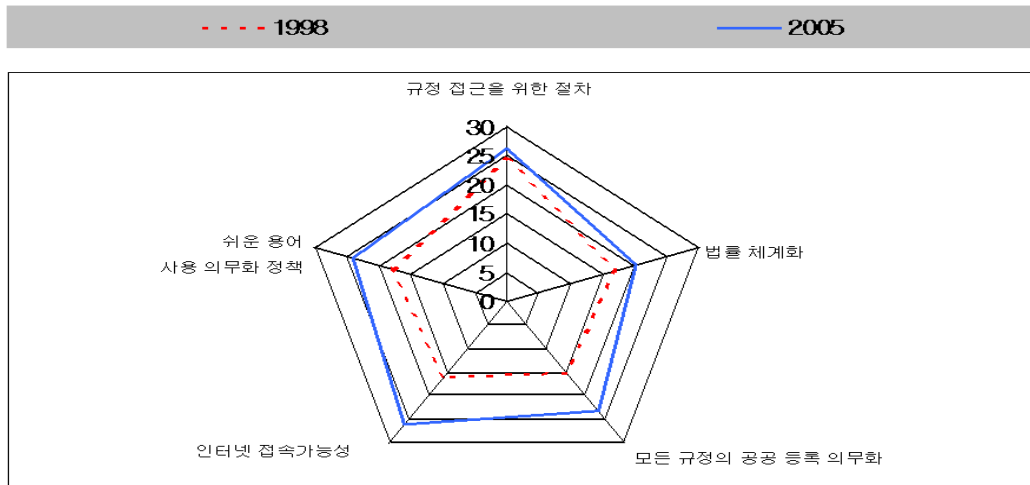
<그림 6> 공공 협의 방식 변화(1998년~2005년)



<자료> OECD(2007), "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"

- 아울러, 직·간접적인 규정의 영향을 받는 관계자들과의 의소소통 및 정보제공은 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
 - OECD 국가들의 이러한 투명한 과정은 1998년에서 2005년 사이에 증가했음
 - 2005년에는 2/3 이상의 OECD 국가들이 법 제정 과정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일반 정책을 보유하고 법 제정자에게 일반 지침을 제공함

<그림 7> OECD 국가의 규정에 관한 소통 및 정보접근성 (국가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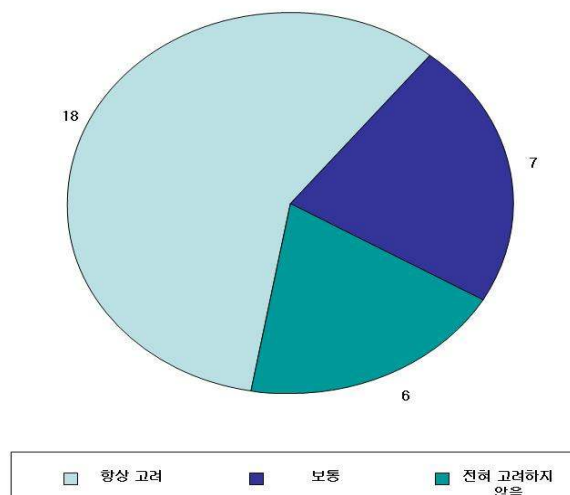


<자료> OECD(2007). "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"

(3) 규정 대안의 유용성

- 정부는 신규 규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경우 다른 정책적 대안 고려
 - 2005년 18개 OECD 국가에서 이러한 대안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도입

<그림 8>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대안을 필수적으로 고려 (국가수, 200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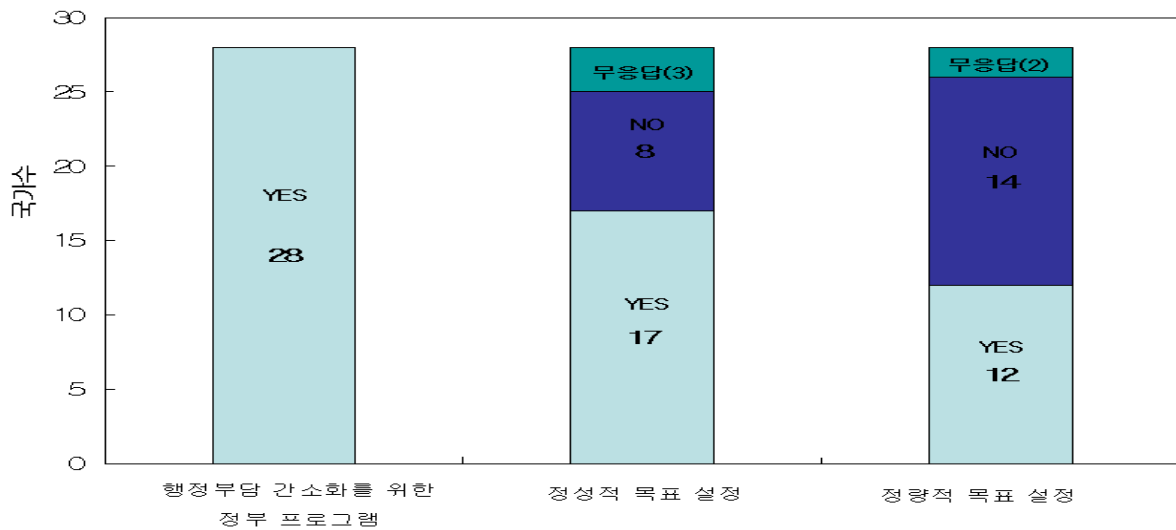


<자료> OECD(2007). "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"

(4) 행정간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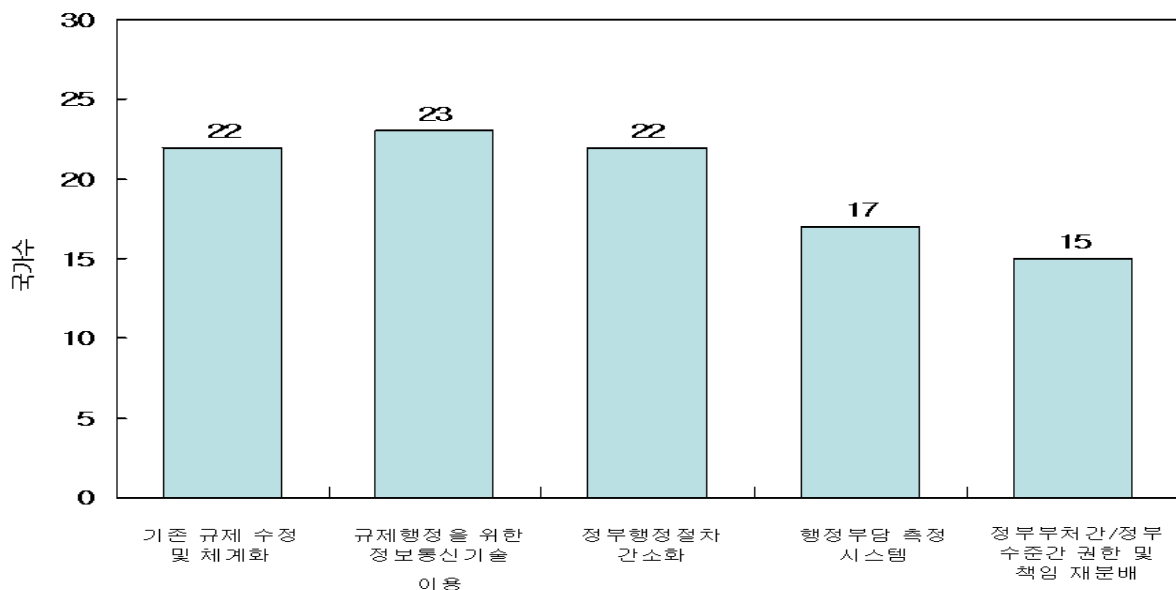
- 행정간소화는 규제 부담을 줄이고 규제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
 -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제거하고, 행정처리기간 단축, 민원신청 및 면허 취득 과정을 체계적으로 간소화
- 행정간소화 프로그램은 혁신과 생산성 방해요소 제거,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정부와 시민간 상호교환 간소화에 기여함
 - 2005년 25개 국가들이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명백한 프로그램 제공 ('98년 20개국)

<그림 9> 행정부담 간소화 (2005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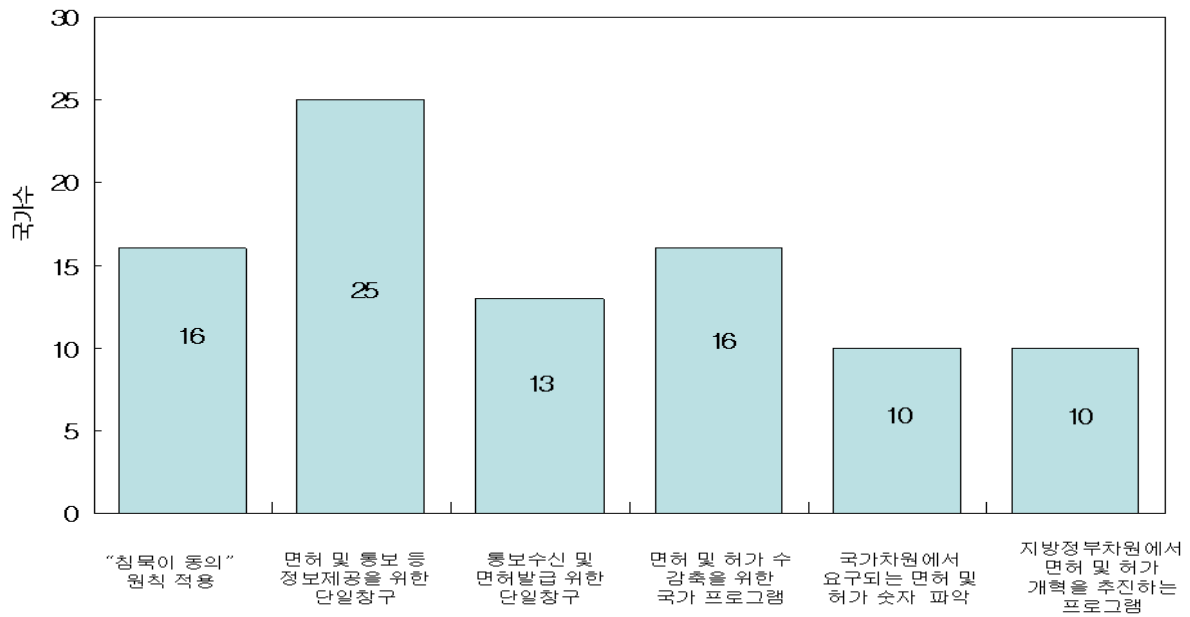
<자료> OECD(2007), "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"

<그림 10>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된 전략 (2005년)



<자료> OECD(2007), "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"

<그림 11> 면허 및 허가 (2005년)



<자료> OECD(2007), "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"

- o OECD 많은 국가들이 표준비용모델(SCM : Standard Cost Model)을 사용하여 결과를 측정하고 있음
 - 효율적인 기업이 정부의 행정절차를 순응하고 정부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에 대한 순수 지표 제공 및 정량적 목표설정의 시발점으로 사용됨

4. 맺음말

- o 생산성 증가, 기업정신 강화, 보다 나은 규제정책과 규제 질 개선을 위한 도구 및 제도 등은 모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
 - 각 지표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정성적인 분석방법과 OECD 각국의 공통적인 사례 접근에 도움
- o 이제는 규제의 질 개선을 위한 도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야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설계하고 이행하고 평가해야 하는지가 논의의 대상이 됨